

2019년도

2019년 도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제 11 차 회 의 록

- 회의일시 : 2019. 8. 16.(금요일), 14:00
-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출석위원 : 서연호(위원장), 김영운, 정해임, 정형호, 한경자, 한상일, 허순선, 심승구, 양종승, 유영대, 정종수(이상 11명)
-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1	‘김천금릉빛내농악’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	공개
2	‘남원농악’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	공개

【검토사항】

1	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‘승무’ 보유자 인정 예고	비공개
2	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‘태평무’ 보유자 인정 예고	비공개
3	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‘살풀이춤’ 보유자 인정 예고	비공개

심 의 사 항

1. '김천금릉빛내농악'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

가. 제안사항

'김천금릉빛내농악'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2019년 제8차 무형문화재위원회('18.05.24.) 결과에 따라 '김천금릉빛내농악'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을 예고하기로 하고,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('19.05.31.~)한 후에 '김천금릉빛내농악'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1) 추진경과

- '15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조사 계획 포함 및 지정가치 용역 실시
- 문화재위원회, 농악 전국 현황조사 후 조사대상 선정 의결('16.01.22.)
 - 전국 농악 전승현황조사 실시('16, 국립무형유산원)
- '18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조사 계획 포함
- 무형문화재위원회, '김천금릉빛내농악'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검토('18.09.14.)
 -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음. 보유단체 인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 인정할만한 보유단체가 있을 경우 지정을 예고하기로 함.
- '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포함('19.01.24.)
- '김천금릉빛내농악' 보유단체 인정조사 사전회의 실시('19.03.22.)
- '김천금릉빛내농악' 보유단체 인정조사 실시('19.04.06.)
- 무형문화재위원회, '김천금릉빛내농악'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 검토('19.05.24.)
 - '김천금릉빛내농악'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, '김천금릉빛내농악 보존회'를 보유단체(보유자 없는 보유단체)로 인정 예고함.
 - 지신밟기 등 마을공동체 의례와 연계된 거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함.

○ ‘김천금릉빛내농악’ 보존회 의견 제출 요청(‘19.05.28.)

2) 예고사항(관보 제19514호 / 2019.05.31. / 문화재청 공고 제2019-164호)

○ 인정예고 내용

종목 지정 명칭	구분	보유단체명	설립연월일	기·예능	주소
김천금릉 빛내농악	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	김천금릉 빛내농악 보존회	1984.12.29.	악기연주· 판굿(진굿 포함)·개인 놀이	경북 김천시 개령면 빛내길 118

○ 예고 사유

- ‘김천금릉빛내농악’은 대표적인 영남농악으로 경상도 특유의 쇠가락과 쇠놀음, 양손으로 치는 웅장한 대북놀음, 판굿(영풍굿·영산다드래기 등)에서 살피지는 군사진굿의 특징 등이 있음.
-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예술성·기술성, 대표성,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함.
- 김천금릉빛내농악보존회는 김천금릉빛내농악의 전승기량, 전승기반,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김천금릉빛내농악 보유단체(보유자 없는 보유단체)로 인정 예고함.

3) 예고 결과

○ 의견접수 : 2건((사)대한민국농악연합회,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 연합회)

연번(제출자/일자)	접수의견 요지	문화재청 검토 의견(안)
① (사)대한민국 농악연합회(06.1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유단체만 인정하고 보유자를 비인정 하는 것은 단체의 특성상 우려되는 바가 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체의 책임자로서, 각 지역 농악의 전수와 명맥을 유지하는 역할(교과서)로서 보유자와 계승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함 - 단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기는 어렵고, 선장(보유자)이 없다면 표류하는 배(보유단체)가 될 것임 ○ 농악단체에 파트별로 보유자를 인정해야 함.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를 늘려 지원을 확대하여 보존해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 무형법은 종목 지정 시 종목 실현 주체(개인/단체)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유단체는 종목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을 때 인정하며, 보유자와 보유단체 동시 인정의 체계는 아님. ○ 2010년 ‘구례잔수농악’의 신규종목 지정 시 보유단체(보유자 없는 보유단체) 인정을 시작으로, 이후 신규단체종목의 보유단체는 ‘보유자 없는 보유단체’로 인정 고시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규종목 지정에 따른 인정 → 7종목 7개 단체(2019. 7월 현재)

<p>②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 연합회(06.25)</p>	<p>○ 농악은 예능종목임. 뛰어난 예능을 전승하고 보존해야 할 주체로서, 전승의 중심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등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함. 이에 따라 보유자 인정 없는 보유단체 인정을 반대함</p>	<p>- ‘보유자 없는 보유단체’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보유단체가 자율적으로 전수교육을 전담할 ‘전수교육사’를 선발하여 운영토록 안내함. * ‘보유자 없는 보유단체’ 전승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(18.1.22.)</p>
--	--	---

4) 무형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보유단체 의견

-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인정: 동의함.
- 권고사항(지신밟기 등 마을공동체 의례와 연계된 거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)
 - 동의함.

라. 검토의견

- ‘김천금릉빛내농악’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을 예고 하였으며(‘19.05.28.), 인정 예고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2건 있었음.
- ‘김천금릉빛내농악’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.

마. 심의할 사항 : 국가무형문화재 ‘김천금릉빛내농악’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여부

바. 의결 사항

- 조건부 가결함
 - ‘김천금릉빛내농악’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함.
 - 지정번호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농악 종목에 포함함.
 - ‘김천금릉빛내농악 보존회’를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. 단,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법인 정관준칙 내용을 준수하여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.

2. '남원농악'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

가. 제안사항

'남원농악'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2019년 제8차 무형문화재위원회('18.05.24.) 결과에 따라 '남원농악'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을 예고하기로 하고,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('19.05.31.~)한 후에 '남원농악'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1) 추진경과

- '16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조사 계획 포함
- 문화재위원회, 농악 전국 현황조사 후 조사대상 선정 의결('16.01.22.)
 - 전국 농악 전승현황조사 실시('16, 국립무형유산원)
- '18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조사 계획 포함
- 무형문화재위원회, '남원농악'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검토('18.09.14.)
 -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음. 보유단체 인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 인정할만한 보유단체가 있을 경우 지정을 예고하기로 함.
- '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포함('19.01.24.)
- '남원농악' 보유단체 인정조사 사전회의 실시('19.03.22.)
- '남원농악' 보유단체 인정조사 실시('19.04.05.)
- 무형문화재위원회, '남원농악'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 검토('19.05.24.)
 - '남원농악'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, '남원농악 보존회'를 보유단체 (보유자 없는 보유단체)로 인정 예고함.
 - 태평소는 남도가락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함.
- '남원농악' 보존회 의견 제출 요청('19.05.28.)

2) 예고사항(관보 제19514호 / 2019.05.31. / 문화재청 공고 제2019-164호)

○ 인정예고 내용

종목 지정 명칭	구분	보유단체명	설립연월일	기·예능	주소
남원농악	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	남원농악 보존회	1997.11.16.	악기연주· 판굿·개인놀이·부들상모 제작	전북 남원시 술미안길 14-19

○ 예고 사유

- ‘남원농악’은 대표적인 호남농악으로 마을농악과 걸립농악의 성격이 잘 드러나며, 판굿의 뒷굿(도둑잡이굿, 재능기) 구성의 특이성, 호남 좌도농악에서만 사용하는 부들상모를 이용한 부들상모놀이 등이 있음.
-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, 예술성·기술성, 대표성,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함.
- 남원농악보존회는 남원농악의 전승기량, 전승기반,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남원농악 보유단체(보유자 없는 보유단체)로 인정 예고함.

3) 예고 결과

○ 의견접수 : 2건((사)대한민국농악연합회,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 연합회)

연번(제출자/일자)	접수의견 요지	문화재청 검토 의견(안)
① (사)대한민국 농악연합회(06.1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유단체만 인정하고 보유자를 비인정 하는 것은 단체의 특성상 우려되는 바가 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체의 책임자로서, 각 지역 농악의 전수와 명맥을 유지하는 역할(교과서)로서 보유자와 계승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함 - 단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기는 어렵고, 선장(보유자)이 없다면 표류하는 배(보유단체)가 될 것임 ○ 농악단체에 파트별로 보유자를 인정해야 함.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를 늘려 지원을 확대하여 보존해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 무형법은 종목 지정 시 종목 실현 주체(개인/단체)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유단체는 종목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을 때 인정하며, 보유자와 보유단체 동시 인정의 체계는 아님. ○ 2010년 ‘구례잔수농악’의 신규종목 지정 시 보유단체(보유자 없는 보유단체)인정을 시작으로, 이후 신규단체종목의 보유단체는 ‘보유자 없는 보유단체’로 인정 고시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규종목 지정에 따른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7종목 7개 단체(2019. 7월 현재) - ‘보유자 없는 보유단체’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보유단체가 자율적으로 전수

<p>②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 연합회(06.25)</p>	<p>○농악은 예능종목임. 뛰어난 예능을 전승하고 보존해야 할 주체로서, 전승의 중심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등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함. 이에 따라 보유자 인정 없는 보유단체 인정을 반대함</p>	<p>교육을 전담할 ‘전수교육사’를 선발하여 운영토록 안내함. * ‘보유자 없는 보유단체’ 전승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(18.01.22.)</p>
--	---	--

4) 무형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보유단체 의견

-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인정: 동의함
- 권고사항(태평소는 남도가락으로 보완할 것)
 - 동의함.

라. 검토의견

- ‘남원농악’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을 예고하였으며 (’19.05.28.), 인정 예고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2건 있었음.
- ‘남원농악’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.

마. 심의할 사항 : 국가무형문화재 ‘남원농악’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여부

바. 의결 사항

- 조건부 가결함
 - ‘남원농악’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함.
 - 지정번호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농악 종목에 포함함.
 - ‘남원농악 보존회’를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. 단,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법인 정관 준칙 내용을 준수하여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.

검 토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‘승무’ 보유자 인정 예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

2.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‘태평무’ 보유자 인정 예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

3.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‘살풀이춤’ 보유자 인정 예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